#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8683

발의연월일: 2022. 12. 5.

발 의 자:이태규·金炳旭·김석기

김선교 · 김예지 · 박덕흠

서병수 · 이명수 · 정경희

최연숙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이 대규모 지역 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시정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최자가 없는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대규모 인원 참여가 예상되어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축제라고 하더라도 주최자가 없는 경우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핼러윈 기간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도 주최자가 없는 행사로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 또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일정 규모이상의 인원 참여가 예상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역축제 또는 행사 개최에 있어 안전의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11제2항·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11의 제목 중 "지역축제"를 "지역축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지역축제를"을 "지역축제 또는 행사(이하 "지역축제 등"이라 한다)를"로, "지역축제가"를 "지역축제 등이"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축제 등 안전관리계획(재난대비훈련계획을 포함한다.이하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축제 등 안전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축제 등 안전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제후"을 "지역축제 등 안전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제후)"을 "제4항"을 "제6항"으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축제 등 안전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제후)"을 "제4항"을 "제6항"으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축제 당안전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축제 당안전관리계획"을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축제 당안전관리계획"을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축제 당안전관리계획"을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축제 당안전관리계획"을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축제 당전관리계획"을 "지역축제 당전관리계획"을 "지역축제 당안전관리계획"을 "지역축제 당안전관리계획"을 "지역축제 당전관리계획"을 "지역축제 당전관리계획"을 "지역축제 당전관리계획"을 "지역축제 등 안전관리계획"으로, "수립절차, 국회보고"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원 참여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지역축제 등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축제 등 안전 관리계획(제3항에 따른 보완 및 시정 사항 등을 포함한다)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축제 등 안전관리계획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 제66조의11(지역축제 등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 | 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 축제 또는 행사(이하 "지역축 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 | 제 등"이라 한다)를-----지역 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축제 등이-----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지역축제 등 안전관리계획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난대비훈련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 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 등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원 참여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지 역축제 등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등 안전관 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 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 (3) -----

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 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 청에 따라야 한다.

## <신 설>

##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u>지역</u> 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 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

<u>제1항 및 제2항</u>
지역축제 등 안전관리계획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축제
등 안전관리계획(제3항에 따른
보완 및 시정 사항 등을 포함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
역축제 등 안전관리계획을 국
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u>야 한다.</u>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u>⑥</u> 제5항
<u>지</u> 역
축제 등 안전관리계획